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30.  
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3월 16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3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3. 27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욱준)

가. 제안이유

○ 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문화도시 사업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문화도시위원회 구성 정원 확대(안 제17조)

○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용어 정정(안 제19조)

○ 문화도시센터 기능 및 역할의 용어 정정(안 제2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7조(위원회의 구성)는 문화도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별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현행 “20명 이내의 위원”에서 “30명 이내의 위원”으로 증원한 것이며,
- 안 제19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에서는 문화도시 지정 이후 조성사업 추진 중인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“문화도시 지정”을 “문화도시 조성”으로 용어를 정정한 것임.
- 안 제20조(문화도시센터의 기능)는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중 “위원회의 구성·운영”에 관한 사항을 “거버넌스 운영”으로 정정함. 이는 여기서의 “위원회”가 문화도시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기에 용어를 정정한 것임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지정을 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문화도시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위원회 의결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임. 다만, 현재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인원은 타 지역의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원 증원 시에는 거시적으로 지역문화 진흥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1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3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문화도시 사업 참여주체 확대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30명으로 변경하여 사업 참여 주체 확대  
(안 제17조제1항)
- 나. 용어의 정비(안 제19조제1항, 제20조제1항제3호, 제20조제2항)
- 다. 띄어쓰기 정비(안 제8조의 제목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2. 9. ~ 3. 2./21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”을 “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“20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지정”을 “조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위원회의 구성·운영”을 “거버넌스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능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 ① · ② (생략)	제8조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의 문화도시 <u>지정</u> 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9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조</u> ----- <u>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문화도시센터의 기능)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0조(문화도시센터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<u>위원회의 구성·운영</u>	3. ----- ----- <u>거버넌스 운영</u>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
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 
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 
다.

② ----- 운영 -----  
-----  
--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 115 호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3. 3. 27.

제안자: 우경란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- 해당 조례안 일부개정 내용 중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은 다른 지역의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함.

## 2. 수정내용

- 안 제17조를 현행대로 함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 제1항 중 “30명”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20명”으로 한다.

###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<u>2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	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30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”을 “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지정”을 “조성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위원회의 구성·운영”을 “거버넌스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능”을 “운영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 ① · ② (생략)	제8조(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「지역문화 진흥법」 제15조의 문화도시 <u>지</u> <u>정</u> 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(이하 “센 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략)	제19조(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----- ----- <u>조</u> <u>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제20조(문화도시센터의 기능)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 1.·2. (생략) 3.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<u>위원회의 구성·운영</u> 4. (생략)	제20조(문화도시센터의 기능) ① ----- ---.
② 센터의 구성 및 <u>기능</u>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.	② ----- <u>운영</u> ----- ----- ----- ---